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96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박홍배 · 김한규 · 민병덕
이정현 · 강준현 · 홍기원
안도걸 · 박희승 · 김상욱
한병도 · 윤준병 · 김태년
박지원 · 정진욱 · 서영교
박정현 · 진성준 · 한민수
안호영 · 김남근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설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이 원사업자에 의해 지연되거나 일부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러한 문제는 하수급인(중소 건설업체)과 소속 노동자,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공사 품질 저하와 산업 전방의 불신을 야기함. 특히, 정부가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은 노무비 구분관리 등 일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전체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원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일정비율 이상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4조제9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 전단 중 “를 도급받은”을 “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예정금액의 산정기준, 직접 지급 비율, 공사대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자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생략)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 -----에 대하여 <u>는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u> ----- ----- ----- ----- ----- ----- ----- ----- ----- ----- ----- -----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도금대금 예정금액의 산
정기준, 직접 지급 비율, 공사
대금-----

-----.